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지역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국가 R&D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2023년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확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5월 15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목적

- 단순생산형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 설립지원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 전문연구사업자(이하, 연구사업자) 등록 확대를 통한 지역 R&D 수행구조 고도화 및 효율화 추진

2 지원개요

- 지원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11. 30.
 -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선착순 접수·지원하며 컨설팅 기간을 고려하여 '23. 10. 31.까지 접수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 대구지역 내 연구소/전담부서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 지역 외 기업은 대구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가능

지원분야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재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설립 희망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희망 기업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전문연구사업자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및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인정 희망 기업 ■ 기타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전문연구사업자(前 연구개발서비스업) : 연구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인적·물적·매출액 요건을 준수하고 일부 연구개발의 외부수탁 또는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재료·장비의 생산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및 지원 분야별 신고(인증) 요건은 [별첨 2] 참조

□ 지원내용

- 대구 TP에서 전문 컨설팅위원 1:1 매칭
- 기업 설립요건 분석 후 설립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접수절차 등 컨설팅 진행
- 설립에 따른 기업 혜택 안내
- 기업당 최대 3회까지 컨설팅 지원(중복 신청 시 최대 6회까지 지원)
 - * 기업부설연구소와 전문 연구사업자 중복으로 신청한 경우, 1명의 전문 컨설팅위원으로 컨설팅 진행
- ** 컨설팅 비용은 대구TP에서 부담
-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설립/인증 완료 기업 대상 설립/인증 유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배부 및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컨설팅 후속지원
- 연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연 1회 진행)

3

신청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23. 05. 15(월) ~ 10. 31(화) 수시접수
 -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붙임] 지원사업 신청서 스캔본 1부
- 신청방법
 - ① 사업공고 → 지원사업 신청서 다운로드

② 신청서 작성 및 직인날인/서명 후 스캔

③ 이메일 접수(kyh920@dgtp.or.kr) → 담당자 서류확인 → 보완요청

※ 이메일 제목 :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_기업명

※ 이메일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유선연락 필요

④ 전문 컨설팅위원 1:1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매칭 완료가 되면 '매칭 완료 및 컨설팅 진행 안내' 메일 발송

- 신청서(양식) 교부 :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4

문의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연구개발지원센터
김영현 주임연구원 (☎ 053)757-3776 / E-mail : kyh920@dgtp.or.kr

5

유의 사항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제외될 수 있음
- 요구양식 이외 양식은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제외 대상

-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채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인 경우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으로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 대상 여부는 컨설팅 진행 시 서류검토를 통해 판단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구분	세부 업종	범위
1. 주문 연구 산업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약학, 그 밖의 자연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나. 공학 연구개발업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다. 융합 연구개발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라. 시험·검사 및 분석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2. 연구 관리 산업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전략 수립 사업·과제 기획, 기술·시장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지원업	지식재산권 취득·관리·활용, 기술 이전·거래, 기술 투자·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시제품 등 연구개발제품의 기능 및 외관 등에 관한 설계 및 디자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연구실 사고 예방·대응,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3. 연구 장비 산업	가. 광학·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측정장비, 방사선 발생·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나. 화합물 전처리·분석장비 개발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분광분석장비, 질량 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연구용 온도·열·습도·수분 측정장비, 길이·위치 측정장비, 시간·주파수·속도·회전수 측정장비, 질량·무게·부피·밀도 측정장비, 힘·토크·압력·진공 측정장비, 음향·소음·진동·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광학·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4. 연구 재료 산업	가. 연구용 물질·시약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바이오 물질·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다. 그 밖의 연구재료 개발업	연구용 물질·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별첨 2]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인증) 요건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인정요건

구분		내용	
인적요건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2명 이상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명 이상	
물적요건		연구개발활동 관련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 기자재 (부대시설은 필수사항 아님)	

* 단,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된 기업은 중기업이 된 날부터 1년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함

-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구분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학위 및 경력	자연계 분야(자연과학·공학·의학·농학·의학계열 등)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① 좌동 ②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동등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3년제 전문학사는 1년 이상) ③ 마이스터·특성화고 졸업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기사 이상 기술자격인 사람	① 좌동 ②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자로서 2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③ 기능사 기술자격자로서 4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연구사업자

- 인정요건

구분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요건	예외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연구시설 보유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이상	"시험·검사 및 분석업"은 전문인력 2명 이상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이상	-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재료 1개 이상, 해당 연구재료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
비고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하나,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함			

- 요건별 세부기준

구분	세부기준
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관리산업 분야는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를 보유자
연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시설로 볼 수 없음